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3. 고병준 의원 외 7인
- 나. 회부일자: 2025. 2. 4.
- 다. 상정일자: 제273회 제1차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2.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안미자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라. 청년상인 지원사업 (안 제6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5년 2월 3일 고병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전통시장 상인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33.3%에서 '22년 57.6%로 절반을 넘어섰고, 상인의 평균연령은 같은 기간 55.2세에서 60.2세로 증가함. 39세 이하 청년층의 비중은 '13년 6.9%에서 '22년 4.2%로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하는 경향임.

[표1] 전통시장 상인의 연령별 분포¹⁾

(단위:명, %)

구분	수			비중	
	2013	2022	연평균 증감률	2013	2022
29세 이하	1,680	1,049	-5.1	0.9	0.6
30~39세	11,198	6,295	-6.2	6.0	3.6
40~49세	37,887	19,759	-7.0	20.3	11.3
50~59세	73,721	47,036	-4.9	39.5	26.9
60~69세	46,099	68,892	4.6	24.7	39.4
70세 이상	16,051	31,823	7.9	8.6	18.2
계 또는 평균	186,636	174,854	-0.7	55.2	60.2

- 이는 청년의 신규 진입이 미미하고, 기존 상인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 상인의 고령화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청년의 전통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²⁾
- 또한, 통계청 주관 ‘개인창업사업체 생존분석’ 결과 35세 미만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생존시간이 2.3년으로 전체 창업 연령대에서 가장 짧았

1) 국회입법조사처: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24.11. 참조)

2) 늑어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이 필요해! [9시 뉴스] / KBS 2024.12.03.

고, 특히 소매업·음식점업은 창업 후 5년이 경과 하면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³⁾

- 이에 청년이 우리 경제의 일선인 상인으로 첫발을 디딘 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창업 전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시장 및 소비자 이해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마포구는 망원, 상수, 합정, 연남 등의 젊은 세대가 찾는 상권⁴⁾으로 청년상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전단계에서부터 성장·재도전단계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92.5%, 5년 생존율은 57.1%로서 일반 영리기업의 1년 생존율 63.7%, 5년 생존율 3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⁵⁾ 정부 및 지자체의 초기 창업지원이 청년상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참고로,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인천시 남동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나. 조문 검토

3) 창업 5년 안에 10곳 중 7곳 폐업...청년창업 생존기간 2.3년 불과 / 경향신문 2022.01.18

4)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평일에도 북적북적...“청년상인들 등지틀며‘新舊조화’이뤘죠”/디지털타임스 2020. 7. 8.
망원시장이 살아남는 법... 신구의 조화= 망원시장은 2015년 골목형 시장과 2017~2019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거치며 마포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젊은 시장'으로 재탄생했다. 시장 내에선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상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시장 내 상인들이 고령화한 것과 달리, 망원시장의 분위기가 젊어지는 계기가 됐다. 신구(新舊) 조화가 이뤄진 셈이다. 이는 곧 젊은 층 유동인구와도 직결했다.

[AT 현장] 뜨는 전통시장들의 '힙함' MZ들을 불러 모은다 / 아시아타임즈 2024. 11. 1.

망원시장은 방송과 유튜브 유명인 SNS에서 추천하면서 인스타 인증 장소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인스타그램(SNS)의 전통시장 태그 수는 12만개 망원시장 태그 수는 17만개, 망원시장 맛집은 약 3만 개에 달한다.

5) 이철선 외(2022), “기업형태별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6-47.

- 본 조례안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청년상인 육성 계획 수립, 청년상인 지원 사업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체계〉

조 항	조 제목	조 항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제2조	정의	제6조	청년상인 지원 사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7조	업무의 위탁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청년상인”의 정의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의 정의를 따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⁶⁾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안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청장이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을 청년상인 육성 계획에 따라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안 제6조제2항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업무의 위탁)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자 별도의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청년기본법」 제18조⁷⁾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창업 촉진 등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 근거는 타당해 보임.
- 본 조례는 마포구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함과 동시에 노령화·노후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으며,
- 기존 상인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

7)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전통시장 청년상인은 중기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창업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일반 상점의 청년상인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일률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성 있는 제정안이라 사료됨.
- 다만, 기존 청년 지원 정책과 중복 지원 및 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붙임 1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사업 현황

□ 조례 제정: 7개 기초자치단체

(2024. 11. 8. 기준)

자치구	2024년 유사사업 예산액(단위:천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 청년특화사업물품구입 2,100 ○ 청년특화사업강사료 2,800	○ 보증금 및 월세료 지원 ○ 세무·회계 등의 기본교육 및 창업 컨설팅 ○ 전문가 멘토링 제공 및 청년상인 콘테스트 진행 ○ 구 소식지 및 SNS 홍보 지원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전통시장문화행사 50,000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23,040 ○ 전통시장시설현대화공모사업 57,088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18,720	○ 경동시장 청년몰 예비 청년상인 모집사업 (창업교육 및 청년몰 점포배정, 점포임차료 및 인테리어비용 보조, 아이템 전문가 지도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 청년상인교육지원 18,000 ○ 청년상인행사지원 19,000 ○ 전통시장및상점가행사홍보 52,000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 (청년상인 멘토링 및 교육, 창업지원센터 마련, 청년 특화골목 조성 등의 지원사업) ○ 성동구 청년상인축제 개최(예술공연 및 노무,일자리 상담)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공모사업(청년상인 아이디어 발굴지원) ○ 청년상인 아카데미 운영(정부지원사업 교육 제공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워크숍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2024년 유사사업 예산액(단위:천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
(생활경제과)	5,000 ○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컨설팅 3,000 ○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 228,730	(창업공간 무상제공, 각종창업활동 지원, 공용이용시설 지원, 창업 기본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등)
대전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38,800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38,800	○ 청년몰 핵심포양성지원사업 (음식업 창업희망 청년지원, 인테리어 및 홍보마케팅 지원,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등) ○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홍보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과)	○ 청년특성야시장운영 56,940 ○ 전통시장공동브랜드개발지원사업 4,050	○ 경영,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등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경제담당)	○ 전통시장청년몰대상자교육 22,000 ○ 전통시장청년몰홍보행사 25,000 ○ 전통시장청년몰예정지관리운영비 3,360 ○ 전통시장활성화이벤트사업 10,000 ○ 청년두드림특화거리조성(전통시장청년몰내부리모델링공사) 680,000 ○ 청년두드림특화거리조성(전통시장청년몰주변정비공사) 400,000	○ 고령군 청년창업공간 들썩거리 조성사업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경영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업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 청년몰 활성화 위한 홍보 및 행사지원 ○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등

- 전국 총 7곳에서 “청년상인” 관련 단독조례 시행 중
-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의 주요내용에는 경영·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이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18조(청년창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